

# 위임장

‘회생회사가 지정하는 자’에게 위임하는 경우

사 건 :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5006 회생

채 무 자 : 주식회사 리솜리조트

공동관리인 : 김진규, 정상환

수임자 :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

(위임받는사람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(역삼동, 동훈타워 7/8/10/11/12/13/15 층)

(담당변호사 남동환, 이왕민, 최효종, 김정동, 유명기, 이승익)

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조사기일,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그  
속행기일에서의 출석, 의견진술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 
위임합니다.

2018. . .

위임자 주소 :

성명 : 주 채 권 자 명 (인감날인)(인)

\* 채권번호(목록번호) 회사작성란 번

**※ 별첨 : 인감증명서 1부 - 2018.4.19 (회생계획안 제출일) 이후 날짜 발급분만 유효함**  
**대전지방법원 귀중**

- \* 위임자는 채권목록의 주채권자이며, 특히 회원인 경우는 **입회분양계약서 상 주계약자만 해당됩니다.**
- \* 주채권자의 **주민등록상 주소(인감증명서의 주소와 일치)**와 성명 기록하시고 채권번호는 회사에서 작성합니다.
- \* 주채권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작성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부를 회수용봉투에 담아 보내주시시오.

※ 참고 : (주)리솜리조트는 대전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 의결권 대리업무 수임자를  
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로 지정하였습니다